

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7. 4. 4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3.2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7.3.27.

다. 상정일자 :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(2017.4.4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생활체육과장 조충연

가. 제안이유

구민들의 체육 및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립된 망원유수지 풋살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민간위탁의 목적

-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

- 운영과 시설관리의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

2) 민간위탁의 내용

- 위탁기간 : 2017. 7. 1. ~ 2018. 8. 31. (1년 2개월)
- 위탁운영 시설현황

소재지	시 설 현 황					토지소유	비고
	총 규모	풋살장	관리실	그늘막	벤치		
망원유수지	990㎡	800㎡	1동	2동	8개	마포구	인조잔디

- 위탁내용

- 시설물 및 부대시설 유지·관리
- 시설물 이용 및 사용료 징수

- 위탁조건

- 운영시간 : 주간 08:00~18:00 / 야간 18:00~22:00
- 이용방법 :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신(<http://yeyak.seoul.go.kr>)
- 위탁금액 : 6,090천원/年(1,522.5천원/분기) 구 세입처리
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- 수탁기관 선정주체 :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(별도 구성)

3) 추진 일정(예정)

- 공개모집공고 : 2017. 5. 1. ~ 5. 14.
- 신청서 접수 : 2017. 5. 15. ~ 5. 17.
- 선정 심사 : 2017. 5. 18. ~ 5. 24. (기간 중 1일)
- 심사결과 발표 : 2017. 5. 26.
- 협약 체결 : 2017. 6. 1.
- 위탁 운영 : 2017. 7. 1. ~ 2018. 8. 31. (1년 2개월)

4)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16.11.30.] [법률 제14197호, 2016.5.29., 타법개정] 제9조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- 동의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.
- 풋살장 총 규모는 관리동과 그늘막 등을 포함하여 990㎡이고, 위탁기간은 마포구민체육센터와 영리생활체육관 등 구립체육시설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2017년 7월 1일부터 1년2 개월로 하였으며, 위탁내용은 시설물 및 부대시설 유지·관리, 시설물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이 되겠음.
풋살장 민간위탁은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·운영을 통한 효율성 증대 및 이용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기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